

변리사 시험 1차 대비

# 조현중 특허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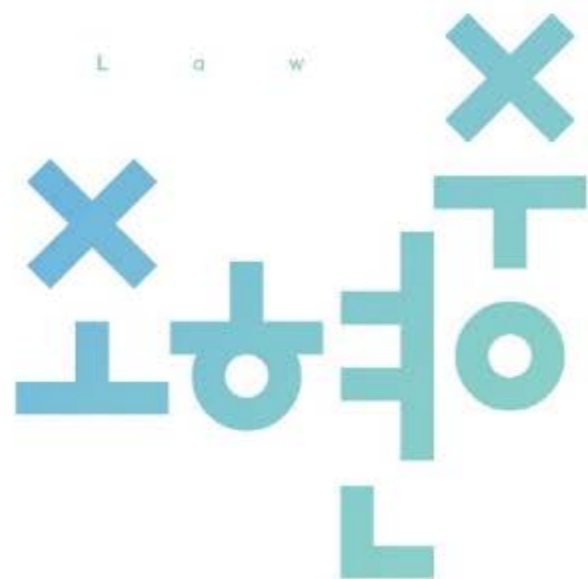
서브집 핸드북

제3판



P a t e n t L a w

■ 변리사 조현중



## PREFACE

본 교재는 주요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서브집입니다.

본 교재에는 강의에서 사용하는 약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어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는 JHJ-GROUP.com으로 질문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5월 19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

본 교재는 아래의 법 및 판례를 기준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순번	법령 등	비고
1	특허법	법률 제 18505호, 2022.4.20.시행
2	특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2590호, 2022.4.20.시행
3	특허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456호, 2022.4.20.시행
4	判例	2023년 4월까지 선고된 중요 판례

# CONTENTS

## PART 01 · 특허법 2

제01장 · 특허법	2
제1절 총칙 <개정 2014. 6. 11.>	2
제2절 요건 및 특허출원 <개정 2014. 6. 11.>	13
제3절 심사 <개정 2014. 6. 11.>	31
제4절 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 <개정 2014. 6. 11.>	39
제5절 특허권 <개정 2014. 6. 11.>	45
제6절 특허권자의 보호 <개정 2014. 6. 11.>	66
제6절의2 특허취소신청 <개정 2016. 2. 29.>	70
제7절 심판 <개정 2014. 6. 11.>	77
제8절 재심 <개정 2014. 6. 11.>	99
제9절 소송 <개정 2014. 6. 11.>	101
제10절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개정 2014. 6. 11.>	104
제11절 보칙 <개정 2014. 6. 11.>	119
제12절 벌칙 <개정 2014. 6. 11.>	126

## PART 02 · 이론편 129

제01장 · 절차총칙	130
제02장 · 거절이유	149
제03장 · 출원절차	173

제04장 · 심사, 공개	186
제05장 · 특허권, 실시권, 질권	192
제06장 · 침해실체	207
제07장 · 침해 절차 (심판/특허법원 소송)	218
제08장 · 조약	235

## PART 03 · 요약편 243

제01장 · 절차총칙	244
제02장 · 거절이유	254
제03장 · 절차	264
제04장 · 심사관 심사	282
제05장 · 특허권, 실시권, 질권	286
제06장 · 배타권 침해실체 -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300
제07장 · 특허법배타권 침해절차 - 심판, 소송	301
제08장 · PCT / 기타조약	312

P A T E N T L A W

PART

01

# 조문편

CHAPTER 1 특허법

[시행 2022. 10. 18.] [법률 제19007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1절 총칙** (개정 2014. 6.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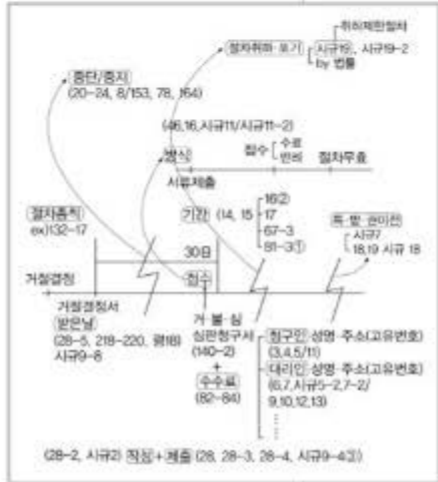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10.)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태어**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절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 **니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태어**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4. 6. 11.]

**제3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①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의) 없이 제132조의2에 따른 특허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이나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개정 2016. 2. 29.> [전문개정 2014. 6. 11.]



- 1) (배타권 효력제한) 94②에 따라 배타권 효력은 약외의 청구에 대해서만 미친다.
- 배타권 효력제한 - 94②, 95, 96, 97-3②, 181, 법상실시권, 권태실시권 등
- 실시권 효력제한 - 94③, 98

- 1-1) (대리인 능력 친권자는 권한 제한 없으나 후견인은 제3자가 attack한 절차에 대한 방어 제외하고 일정 경우 후견감독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권한 제한 있다.
- 법정대리인 친권자 - 규정없음
- 법정대리인 후견인 - 3②
- 임의대리인(특허법) 포함 - 6

**제4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출원심사의 청구인, 특허취소신청인, 심판의 청구인·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전문개정 2014. 6. 11.]

**제5조(제외자의 특허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제외자”라 한다)는 제외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외자의 특허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특허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해서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특허관리인은 위임된 권한의 범위에서 특허에 관한 모든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6조(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 아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특허관리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2. 29.>

1. 특허출원의 변경·포기·취하
2. 특허권의 포기
3.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4. 실청의 취하
5. 청구의 취하
6.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또는 그 취하
7.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거절심)
8. 복대리인의 선임 [전문개정 2014. 6. 11.]

**제7조(대리권의 증명)**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특허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리권은 서면으로써 증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7조의2(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권한의 위임에 흠이 있는 자<sup>6)</sup>가 밟은 절차는 보정(補正)된 당시지<sup>7)</sup>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행위를 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2) (비법인 절차능력, 당사자능력) 비법인인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어도 충분한 특허권이 밟을 수 있는 절차권리능력이 요구되는 절차는 밟을 수 없다. 심사청구, 특허취소신청 등은 충분한 특허권이 아닌 자가 밟을 수 있는 절차를 예시한 것이다.

행위능력자 절차능력 - 3①  
비법인 절차능력 - 4  
새외자 절차능력 - 5

3) 3행위능력자, 4(비법인), 5(새외자)는 본인 절차능력(절차권) 유요하게 행사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관련된 조문이다.

본인 절차능력 하지 사유	요구 사항	위임시 조치	특별 방안
미성년자(제3)	법정 대리인	보정 명령 후 심사청구 (48, 16)	보정 대리인 선임 후 보정추인
비법인(4)	대표자 또는 관리인	-	-
제외자(5)	특허 관리인	본인이유 통지 후 반리 (시규11)	극복 불가

4) (대리인 능력 법정대리인 제외 임의 대리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내용이다) 출·존·독·신·청·우·복·복

5) (대리인 능력) 대리인의 능력(본인 대신 절차를 유요하게 행사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관련된 조문이다.

대리인 능력 구분	조건	내용
법정 대리인	친권자	-
추견인	3②	후견감독인 동의(인)
임의대리인	6	특별 위임
	시규 5-2	포괄위임 등록비

6) 3① 본문에 해당하는 자기 법정대리인 없이 절차를 밟는 경우를 말한다. 법정대리인 친권자 - 규정없음  
법정대리인 후견인 - 3②  
임의대리인(특허법) 포함 - 6

7) 친권자·후견인이 아닌 자 또는 후견인이지만 후견감독인 동의가 필요함에도 그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절차를 밟은 경우를 말한다.

8) 임의대리인과 관련하여 그 절차를 밟는데 필요한 위임장, 특별위임장,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절차를 밟은 경우를 말한다.

9) 미성년자·피한징후권인·피성년후견인에서 극복된 지를 말한다.

9-1) 8-사·능·합·수·사·상  
20-사·능·합·수·사·상  
사·상·사·상

10) 채권의 주체 구분 규정이다. 승원 등 기타절차는 특허청장이 담당한다. 심판장 지정된 후 심판정치는 심판장이 담당한다. 구술심리자는 심판장 지정된 후 진행되는 심판절차다.

11) (대표자 선임) 개별대리의 유사한 내용이다. 국내출원은 본인인 대표자 선임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국제출원 part 1에서는 수리판정이 대표자 지정할 수도 있다(197②).

**제8조(대리권의 불소멸)<sup>9)</sup>**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2.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3. 본인인 **출탁자(受託者)의 신탁임부 종료**
4.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5.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이나 **변경(대리권 상실)** [전문개정 2014. 6. 11.]

**제9조(개별대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2인 이상이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각각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10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① 특허청장<sup>10)</sup> 또는 제14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장**(이하 "심판장"이라 한다)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口述審理)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절차를 밟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대리인을 바꿀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③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변리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 그 전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전문개정 2014. 6. 11.] [제목개정 2019. 12. 10.]

**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 ① 2인 이상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sup>11)</sup>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하면 그 대표자만이 모두를 대표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1. 특허출원의 **변경·포기·취하**
2. 특허권 **소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3. **심청의 취하**
4. **심구의 취하**
5. 제55조제1항에 따른 **출선권 주장 또는 그 취하**
6.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거절심)**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sup>12)</sup>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12조(「민사소송법」의 준용)** 대리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편제2장제4절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13조(재외자의 재판관할)** 재외자의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특허관리인이 있으면 그 특허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특허관리인이 없으면 특허청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이 있는 곳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14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sup>13)</sup>에는 계산에 넣는다.
2. 기간을 월 또는 연(年)으로 정한 경우에는 역(曆)에 따라 계산한다.
3.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起算)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의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마지막 월에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그 월의 마지막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4. 특허에 관한 절차<sup>14)</sup>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15조(기간의 연장 등)** ① 특허청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도서·벽지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sup>15)</sup>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sup>16)</sup> <개정 2016. 2. 29.>

12) 대리권 서면증명기간 유사한 내용이다. 「대표」의 생략은 「대리」의 생략과 논리가 유사하다.

13) 34, 35 등이 해당될 수 있으나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개외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14) 절차와 무관한 존속기간계산(88) 등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절차상 서면의 제출이 필요한 행위라고 정리하면 된다.

15) (법정기간) 시구(18②) 추가 연장 횟수 1회, 기간 30일

16) 거절심 청구기간 연장 처분의 주체는 특허청장이다. 심결·결정리소송 부기간 지정 처분의 주체는 심판장이대(188⑤).

17) 보정명령(46), 반려이유통지(사규 11) 시의 지정기간을 예로 들 수 있다.

18) 보정명령서(141)의 지정기간을 예로 들 수 있다.

19) 거찰이유통지(63)서 시정기간을 예로 들 수 있다.

20) 구술심리기일(154㉔)을 예로 들 수 있다.

21) 기간정립은 개산4 → 연장 등배  
→ 정지(20, 23, 78, 153, 164)  
→ 추후보완(162) 17, 67-3,  
81-3㉔)으로 이어나간다.

추후보완사유	기간
보정명령(46)	
거찰심 채상하	2월, 1주
심사청구, 재심사청구(67-3) 등으로, 유지(81-3㉔)	

21-1) 17 - 책임질 수 없는 사유  
그 외 - 정당한 사유

②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sup>21)</sup>·심판장<sup>20)</sup>** 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사관<sup>19)</sup>**(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 등은 그 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단축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이 법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sup>20)</sup>**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16조(절차의 무효)**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46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다만, 제82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료를 내지 아니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심사청구료를 내지 아니하면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에 관한 보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up>21)</sup>

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 본문·단서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17조(절차의 추후보완)**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sup>21-1)</sup>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29.>

1.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2. 제180조제1항에 따른 **제심**의 청구기간 [전문개정 2014. 6. 11.]

**제18조(절차의 효력 승계)**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의 효력은 그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19조(절차의 속행)**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係屬) 중인 때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면 그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행(續行)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20조(절차의 중단)**<sup>21-2)</sup> 특허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2.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따라 소멸한 경우
3.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
4.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
5. 당사자의 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
6.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7. **파산관재인** 등 일정한 자격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가 그 **자격을 잃거나(상실)** **사망**한 경우 [전문개정 2014. 6. 11.]

**제21조(중단된 절차의 수계)**<sup>22)</sup> 제20조에 따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호의 경우: 사망한 당사자의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법률에 따라 절차를 속행할 자. 다만,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2. 제20조제2호의 경우: 합병에 따라 **소멸**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 제20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절차를 밟을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자
4. 제20조제5호의 경우: 새로운 **수탁자**
5. 제20조제6호의 경우: 새로운 **대표자** 또는 각 **당사자**
6. 제20조제7호의 경우: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전문개정 2014. 6. 11.]

21-2) 사·능·합·수·사·상·사·상·사·상

22) 중단사유와 수계할 자 정리한 표이다

중단사유	수계할 자
당사자 사망	상속인 등(단 상속포기기간 지난 후 수계 가능)
법인 합병에 따른 소멸	합병 후 법인
당사자 능력상실, 법정대리인 사망·대리권 상실	능력 회복한 당사자, 법정대리인
수탁자 임무 종료	새로운 수탁자
대표자 사망·자격 상실	새로운 대표자 또는 각 당사자
파산관재인 등 사망·자격 상실	같은 자격 가진 자

**제22조(수계신청)<sup>22-1)</sup>** ① 제20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은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대방은 특허청장 또는 제143조에 따른 심판관(이하 "심판관"이라 한다)에게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계신청할 것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20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이 있으면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③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20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 또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한 후에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해서는 수계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sup>22-2)</sup>.**

⑤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단된 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계를 명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수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⑦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6항에 따라 수계가 있는 것으로 본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23조(절차의 중지)** ①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된다.

② 당사자에게 일정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으로 장애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중지나 제3항에 따른 취소를 하였을 때에는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그 사실을 각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4. 6.]

**제24조(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특허에 관한 절차가 중단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되고, 그 절차의 수계통지를 하거나 그 절차를 속행하였을 때부터 다시 **모든 기간이** 진행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25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제외자 중 외국인<sup>25)</sup>**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

1.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3.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4. 6. 11.]

**제26조 삭제** <2011. 12. 2.>

**제27조 삭제** <2001. 2. 3.>

**제28조(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sup>28-1)</sup>**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관에게 제출하는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공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관에게 **도달한 날**부터 제출의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 6. 11.>

② 제1항의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관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와 「특허협력조약」 제2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관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 6. 11.>

1. 우편물의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에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 : 표시된 날
2.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우체국에 제출한 날을 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한 날

③ 삭제 <1998. 9. 23.>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편물의 지연, 우편물의 망실(亡失) 및 우편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서류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6. 11.> [제목개정 2014. 6. 11.]

	내국민 (한국 국적)	외국인 (외국 국적)
제외자 (한국 주계)	-	-
제외자 (외국 주계)	5,206 (방식사유, 특허 권리인 8)	5,206 (방식사유, 특허 권리인 8) / 25(거절사유)

23-1) 서류작성 제출 송달  
작성 - 고유번호주소, 서명(인  
자서명)  
제출 - 직접, 우편, 온라인  
송달 - 직접, 우편, 온라인, 공시



24) 시규9-1(가) 특허심판원의 개도 모든 절차라고 보면 된다.  
 25) 시규9-2(가)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가급적 사전에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절차를 밟는 서류에는 주소 대신 부여받은 고유번호를 적을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26) 시규2 주소 또는 고유번호 중 하나를 적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려 사유에 해당한다(시규11).

27) 시규9-2(가) 단 국방관련 출원의 경우에는 비밀재정보지 전까지는 전자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

28) 시규2 방식상 일반서류 접수기재사항 - 성명+고유번호(또는 주소)+서명(또는 날인) 방식상 전자문서 접수기재사항 - 성명+고유번호(또는 주소)+전자서명

**제28조의2(고유번호의 기재)**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sup>24)</sup>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자신의 고유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sup>25)</sup>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1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직권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자신의 고유번호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서류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sup>26)</sup>  
 ⑤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고유번호의 부여 신청, 고유번호의 부여 및 통지, 그 밖에 고유번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28조의3(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특허출원서, 그 밖의 서류<sup>27)</sup>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분산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sup>11)</sup>  
 ④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제출방법, 그 밖에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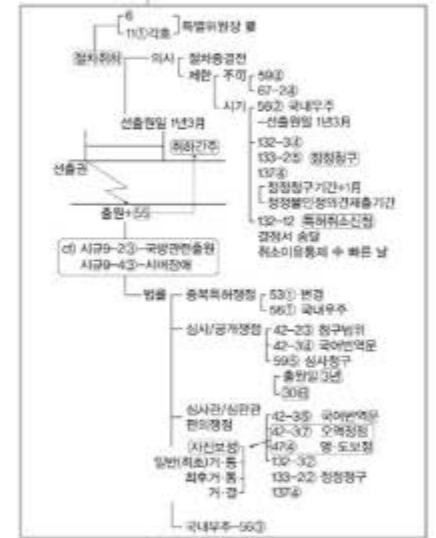
**제28조의4(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① 전자문서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알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sup>28)</sup>

② 제28조의3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sup>29)</sup>, 전자서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28조의5(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①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심판관 또는 심사관은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한 서류의 통지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의 통지등은 그 통지등을 받을 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그 서류를 확인한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하는 통지등의 종류<sup>31)</sup>·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29) 시규9-3  
 30) 시규9-4(3), 전산상대

31) 시규9-8



변리사 시험 1차 대비

공공성 권리  
job.willbes.net

조현중  
특허법

P a t e n t L o w

# 조현중 특허법

서브집 핸드북

제3판 | 변리사 조현중

정가 19,000원



이 책은 도서출판 윌비스가 저작권자와의 계약에 따라 발행하였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본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